

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22. 4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」 건은 당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와 장기간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고급오락장(유흥시설)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자 해당 시설의 중과분 재산세의 감면 사항을 포함하였으나,
- 영업 자체의 금지가 아닌 영업시간의 일부제한은 현행 규정상의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내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구미시의 <고급오락장의 중과분 재산세 감면>사항 삭제 요청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.

2. 수정 주요내용

- 「고급오락장(유흥시설)의 중과분 재산세 감면」 건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당초 동의안과 동일하게 함.
- 감면 예상액
 - (당초 추정) 약 26억 원
 - (변경 추정) 약 16억 원